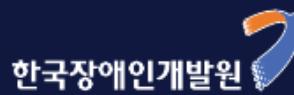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

성희롱 예방 · 안전보건교육



**실무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법정필수교육제도란?

- 법정필수교육은 교육노동부에서 지정한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사항입니다.
- 법정필수교육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퇴직연금 교육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이에 2018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이 기존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침, 직무 및 직업교육, 소양교육(직장예절 등)에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 추가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변경사항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12p 참고

구분	2017년	2018년
참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직무 및 직업 교육, 소양교육(직장예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등 [p64, p79, p88, p97]- 기본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u>안전보건교육</u>, <u>성희롱 예방교육</u>,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u>안전보건교육 자료 활용방법</u>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정보마당→자료실→ 직종, 주제, 업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교육자료 활용 가능」• <u>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활용방법</u>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주요정책→정책자료실→인권보호→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정보마당→분야별 자료실→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 활용」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교육명	법령	의무사항	기타
성희롱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예방과 관련한 규정/ 남녀교육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법 제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대표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체인 경우 위 두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자료와 홍보물을 게시 · 배포함으로써 외부 교육을 대체 할 수 있음
산업안전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 ·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분기 3~6 시간 이상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상 1인당 3~15 만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직, 판매직 :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의 근로자 : 매분기당 6시간 채용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 시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타 업종 교육 시간의 1/2에 해당만큼 교육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예외 업종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 위탁 가능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요

교육명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구성	기대효과	본사업 참여자 교육 연계 방안
성희롱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환경 구축 • 일상생활에서의 배려와 존중 • 성희롱의 개념 및 특징, 유형을 알고 성희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인지 • 사례를 통한 성희롱의 유형을 알고 올바른 인식 제고 • 성희롱 예방 지침 및 법적 구제절차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성폭력 등의 개념을 인지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함께 어우러져 일 할 수 있는 유쾌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음 • 성희롱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희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공 •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안과 예방법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임시·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은 충분한 시간동안(1시간) 내실있게 진행 • 사업장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도 가능
산업안전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에 대한 목적과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중요성 인지 • 산업안전보건교육법에 대해 습득하고 재해 발생시 대처방안 제시 	<p>채 용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안내 • 작업개시 전 점검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 사항 등 <p>정 기 교 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시 응급처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의 체계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재해에 의한 손실을 방지 할 수 있음 •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발생 사례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전수 채용시 1시간+분기별 3시간 교육 운영 • 해당업무 3년이상 종사자, 혹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운영 가능

**실무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 매뉴얼**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하급자도 포함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 ex) 가해자가 상급자 여성, 피해자가 하급자 남성이 될 수 있음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
- 성적 연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연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채용탈락, 감봉, 정직, 휴직, 해고 등)도 해당

2. 성폭력 vs 성희롱 판단기준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p>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간, 강제추행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p>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p> <p>육체적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p>언어적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란한 농담을 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p>시각적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인터넷, 스마트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p>*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p>

3.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유형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몸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주는 것, 성기 등 몸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동도 성희롱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나의 성 경험을 물어보는 것, 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나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말도 성희롱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만지는 행동은 성희롱입니다. 식사 때, 옆에서 술을 따라달라고 하거나 성관계, 성추행을 하는 행동도 성희롱입니다.

4. 직장 내 성희롱사례

- ① 동성끼리도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성인 구청 공무원에게 성희롱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 ○ 구청에서 계약직 방역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동성의 담당 공무원이 1달 전부터 다른 사람의 이목과 상관없이 저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크다”, “가슴이 여자보다 큰데?”, “가슴이 B컵은 되겠어”라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화를 내고 항의를 하자 다른 곳으로 불러내더니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떠들 일이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힘들게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생각하고 계약직이기는 하나 힘들게 취업을 해서 속으로 고민만 했는데 지속적으로 당하니 수치심에 잠도 못잘 정도로 힘들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출처 : '2016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② 직장상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성희롱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직장상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얼마 전 상사가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여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사가 노래방에서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신체접촉도 시도했는데, 상사를 잘 타일러서 “옷을 입어라, 빨리 나가자”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매우 불쾌했으나 일을 그만 둘 수 없어 참고 넘어갔는데 상사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서 인사과에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평소 평판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 회사에서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보다 상사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출처 : ‘2016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자, 영상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야한 동영상을 보내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 한 명이 갑자기 핸드폰에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열어보았더니 20초 정도 되는 축구동영상인데, 남자 성기와 여자가슴이 노출된 영상이었습니다. 그 상사는 방송에 나온 영상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 교육을 받아보니 이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메신저로도 따졌습니다. 상사는 그냥 순간 포착한 영상이라면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순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계속 따져 물었더니 상사는 초등학생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를 삼고 상사에게 따져 묻는다면서 오히려 면박을 줬습니다.

출처 : ‘2015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④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대표가 회식을 강요하더니 남녀 직원 모두에게 첫 경험을 물었습니다.”

입사한지 이를 만에 겪은 일입니다. 회사 대표가 지점을 방문했다가 회식시켜준다면서 참여를 강요했습니다. 횟집에서 직원들이 친한 사람끼리 앉으니 대표는 “그러지 말고 남녀 남녀끼리 앉는게 좋지 않겠냐?”며 섞어 앉게 하였습니다. 술을 권하여 제가 거절하였으나 옆에 있던 동갑인 남자직원이 저의 손을 잡게 하고 저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술을 마실 때마다 “이성에게 키스하듯이 쪽쪽 빨면서 술을 마셔라”는 멘트를 계속 하였습니다. 대표는 여직원, 남직원 모두에게 “첫 경험이 언제냐?”고 묻고 자기 첫 경험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지지 않겠니?”라는 말을 하면서 대답을 종용했습니다.

출처 : ‘2015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⑤ 성희롱 피해를 신고 후,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성추행 사건 조사위원들이 가해자보다 더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 ○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종강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관련 조사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인 한 남자 교수가 “추행 장면을 시연해보라”고 해서 설명을 하였더니 “자세하게 어떻게 만졌는지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니, 옆에 있던 위원인 여자 교수가 “뭐하는 거냐, 사건을 알기 위해 묻는데 유두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은 “가슴이 너무 많이 드러난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지, 소매 안으로 손을 넣지 않았느냐?” 등의 발언을 한마디씩 하는데 가해자에게 당한 것 보다 더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출처 : ‘2016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5.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요령

-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
-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회사 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충처리위원이나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이 별도로 없을 경우, 상급자 등에게 상담 및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신고 가능

-
- 직장내 성희롱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 모바일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 인터넷 www.moel.go.kr
 - 모바일 앱 M.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개상담센터 1350
 - 기타 상담기관 : 고용평등상담실(전국15개소)
 - 성폭력 · 성추행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

6.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 안내

법적 근거	법안 내용	과태료 및 처벌
성희롱 금지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항)
성희롱 예방교육 (제3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제2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의2 제 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제2항)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매뉴얼

1. 안전보건교육이란?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및 작업순서 즉, 작업표준, 작업절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스스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 끊임없이 반복되고 안타까운 사고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을 가리지 않고 일어남
-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으로 안전의식 변화 및 안전교육 필수
- 이에 직장 내 규칙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할 규칙이고 기준임

2. 산업재해 특성 및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재해 현황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 수 : 90,656명	
재해자의 특성	근속 기간	6년 미만 근로자에서 55.3% 이상 발생 (신규입사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출처 :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안전보건공단(2015)〉
	사업자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8% 발생 (5인 미만 : 29,540명, 32.6%, 5인~49인: 44,654명, 49.3%)
	연령	5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 (18세~24세 : 3,669명, 4.0%, 25세~34세 : 10,289명, 11.35%, 35세~44세 : 14,613명, 16.11%, 45세~54세 : 24,041명, 26.5%, 55세이상 : 37,958명, 41.9%)
사고 재해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 넘어짐(전도) 15,948명, 17.6% • 2위 : 떨어짐(추락) 14,679명, 16.2% • 3위 : 끼임(협착) 13,260명, 14.6% • 4위 : 절단 · 베임 · 찔림 8,541명, 9.4% • 5위 : 부딪침(충돌) 7,246명, 8.0% • 기타 	
질병발생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 요통 2,737명, 34.8% • 2위 : 신체부담작업 2,098명, 26.6% • 3위 : 진폐 1,418명, 18.0% • 4위 : 뇌심질환 587명, 7.5% 	
업종별 재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 기타의 사업 29,692명, 32.8%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2위 : 건설업 26,570명, 29.3% • 3위 : 제조업 26,142명, 28.8% 	

〈출처 : 「2016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2017).〉

3. 재해 사례별 원인과 대책

1위

넘어짐(전도)

재해사례	복도를 청소하다가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짐	사무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급식지원 업무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넘어져 다침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기 쉬움• 일반 슬리퍼를 신고 업무수행		
재해 예방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욕 등 작업이 끝나면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닦아주고 정리• 미끄럼 방지 신발, 매트 등 사용. 작업 중에는 슬리퍼 신지 않기		

2위

떨어짐(추락)

재해사례	<p>사무실 복도에 있는 창문을 닦으려고 작은 의자에 올라갔다가 의자가 넘어져 떨어져 다침</p> 	<p>도서관 사서 보조로 근무하며 책을 정리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침</p> 	<p>우체국에서 우편물 정리 업무를 하다가 책장 위에 쌓여 있던 박스가 떨어져 다침</p>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간이의자, 바퀴달린 의자 등에 올라갈 경우, 중심을 잃고 의자에서 떨어지기 쉬움사다리 등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기 쉬움정리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떨어져 다칠 수 있음		
재해 예방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교적 높은 곳을 청소할 경우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사다리 등 적절한 도구 사용넘어지기 쉬운 곳에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2인 1조로 청소하기물건들이 쌓여있을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 잘하기		

3위

끼임(협착)

재해사례	<p>급식지원으로 일을 하며 밥과 국을 카트에 싣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어서 다침</p> 	<p>사무보조로 일을 하며 문서를 파쇄하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다침</p> 	<p>기부물품 정리 및 포장하는 일을 하다가 쓸어놓은 무거운 상자에 손이 껴서 다침</p>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동문, 승강기 문 이용시 무거운 물건에 집중하여 전후좌우를 잘 보지 못하면 끼이기 쉬움기계를 사용할 때 헐렁한 장갑을 끼거나, 잠시라도 산만하면 실수하여 위험해지기 쉬움문제 발생시, 기계를 잠시 살펴보려고 할 때 전원차단을 하지 않으면 다치기 쉬움		
재해 예방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물건을 이동하고 나를 때, 승강기 문, 자동문 등을 좌우 잘 확인하며 움직이기기계를 사용할 때는 장갑, 머리카락, 넥타이 등이 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문제가 있을 경우, 전원을 끄고 정지된 상태에서 조치		

4위

절단 · 베임 · 찔림

재해사례	<p>사무보조로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칼로 열다가 칼에 베어서 다침</p> 	<p>급식보조로 일을 하며 당근을 썰다가 칼날에 손을 베어서 다침</p> 	<p>호텔객실관리 업무 중 벽에 걸린 액자를 청소하다가 벽에 물은 뒤에 찔려서 다침</p>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날카로운 칼, 가위 등을 사용할 때, 잠시라도 산만해질 경우 실수로 베이거나 찔릴 수 있음날카로운 기구 및 도구 사용시 불안정한 자세로 사용할 경우 다치기 쉬움		
재해 예방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채소, 과일 등을 자를 때에는 베임 방지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칼은 아무데나 놓지 말고,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정해 지정된 장소에만 두고 사용절단, 다듬기 등의 칼등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 자신의 몸 바깥방향으로 작업		

5위

부딪침(충돌)

재해사례	<p>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업무를 하다가 주차장에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쳐 다침</p> 	<p>환경정리 일을 하며 문 뒤 쪽을 청소 하다가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쳐 다침</p> 	<p>급식보조 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쳐 다침</p>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전후좌우를 잘 보지 못하면 부딪히기 쉬움• 위험한 장소나 어두운 곳에서는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충돌하기 쉬움		
재해 예방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을 닫고 청소하되 '청소중' 표시판을 세워두고 사람이 있음을 알림• 파이프 모서리와 같이 부딪힐 염려가 있는 곳에는 스폰지 등을 대고 안전하게 한 뒤 작업• "머리 조심"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 위험한 곳이 가까울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임• 도로 이동 시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이동하고, 외부에서 업무 진행 시 2인1조로 작업 수행		

기타

화학용품에 의한 사고

재해사례	<p>청소용 세제 등 화학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중독</p> 	<p>청소작업을 마치고 휴식 중, 음료수병에 떨어 사용하던 세제를 음료수로 오인하여 마시고 사망</p> 	<p>창고에서 유리병에 담긴 화학용품을 가지고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는 사고로 호흡기 질환</p>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세정제 사용 등 마스크, 장갑 등을 사용하지 않아 두통과 피부병 등에 걸리기 쉬움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미 표기로 오인하여 사용할 수 있음작업 종류에 따른 적절하게 마스크, 안전모,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아 다치기 쉬움		
재해 예방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MSDS 작성 및 경고 표시를 반드시 부착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MSDS에 관한 교육 실시작업종류에 따른 적절한 개인 보호구(안전모, 마스크, 안전화, 장갑 등) 지급 및 착용 관리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안전경고표시 등에 대한 세부 내용 49p~50p 참조

4.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

-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소규모인 점과 법정 교육 의무가 있음을 감안하여 다수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활용

〈참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퀵메뉴>안전보건자료실>업종별자료>서비스업”

↳ (도매업) 책자 14종, 동영상 3종, 교안 4종, 리플렛 77종, 포스터 4종 (숙박 및 음식점업) 책자 12종, 동영상 8종, 교안 6종, 리플렛 54종, 포스터 12종

- 이외 관련 자료는 서비스업 → 공통 또는 자료실 전체자료보기에서 검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특정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강사로 인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정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운영 가능

참고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MSDS 구성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별 제조 및 공급자 정보,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화학물질의 특성, 응급처치 요령, 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폐기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고, 자료를 이용하여 취급하는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 MSDS 관리 및 용기 경고 표시

- 화학물질별로 작성된 MSDS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MSDS 및 경고표지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명	Cas No.	KE No.	UN No.	EU No.
에틸 알코올	67-56-1	KE-23193	1238	200-659-6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에틸 알코올			
나. 제조사의 권리 물도와 사문상의 제한				
제품의 권리 물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문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자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관리자 정보 기재				
회사명	영신화학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58-3, 601-13호 (도자동, 지아인트라보안산센터)			
긴급 전화번호	031.410.8079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 / 눈 자극성 : 구분 2 생식독성 : 구분 1B 특정포혁징기 독성(의 누출) : 구분 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

메틸 알코올(CAS No.67-56-1)

위험

유해위험문구

- 고민화성 력체 및 증기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킵니다.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입으킬 수 있습니다.
- 폐쇄공간 등록위험, 출입, 피부 출수, 삼킬 이후 경이한 중추신경계통 저하 가능
-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8~24시간이 지난 후 빛에 대한 민감성 증가, 시각이 흐릿침, 실명 증상을 비롯한 극심한 시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문구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세정 후에는 쉬운 부위를 청潔히 빗으십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훔淳하지 마시오.
- [보호장갑·보호의·보안장·안면보호구]를 착용해 주십시오.
- 피부 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십시오.
- 피부를 물로 씻으십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성해서 씻으십시오. 가능한 한 펜택토렌즈를 제거하시고 계속 빗으십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약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 금금장치가 있는你是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급급 범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동물 풍가를 폐기하십시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복정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000-000)

〈MSDS 경고표지 예시〉

* MSDS 세부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ttp://msds.kosha.or.kr/>에서 확인

1. 금지 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탐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 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금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출균형 성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 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 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증발·정정·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출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출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출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주가시 예시문	 화기유지금지 화기유지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회복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